

국민권익위, 공익신고로 인한 모든 소송절차 소요비용 지원... 신고자 보호 두터워져

- 보상·포상금 지급사유 확대해 신고 활성화 유도... -
-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번 달 21일부터 시행 -

(2021. 10. 20., 국민권익위)

앞으로는 공익신고로 인한 모든 소송절차 소요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신고로 인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한 경우 법원 판결 없이 행정기관의 환수 처분만 있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10월 21일부터 시행했다.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임금 등 경제적 피해를 받았거나 이사·치료비용, 소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송비용의 경우 해고, 징계 등 불이익조치로부터의 원상회복을 위한 소송절차 소요비용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익신고로 인한 모든 소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소송을 당해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경우에도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특히, 개정 법령 시행일인 이번 달 21일 이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어 공익신고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수입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국민권익위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원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없이 공익신고로 인한 행정기관의 환수처분만 있어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보상금 신청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예를 들어, 병원이 건강검진 비용을 부당 수령해 지방자치단체가 검진비용 지원분을 환수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단, 보상금 관련 개정사항은 법령 시행일인 이번 달 21일 이후에 한 공익신고부터 적용된다.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사유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신고로 인해 과태료, 과징금이 부과돼야 포상금 추천 대상자가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산금, 부담금 등이 부과돼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각 기관이 필요시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 등을 스스로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 신고자를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권익위가 총괄하는 신고자 보호·지원제도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강력해졌다.”라며,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주요 개정사항

- '21.4.20. 공포, 10.21. 시행 -

신고자 지원

- 구조금 지급사유를 해고·징계 등의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 일체로 확대
 - ※ 법 시행 이전에 지출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도 지급신청 가능
-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기간 2년 → 3년으로 연장
 - 국가·지자체의 수입 회복·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 3년 이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보상금 신청 가능
 - ※ 법 시행 이후 이루어진 공익신고부터 적용
- 포상금 환수규정 신설 및 보·포상금, 구조금의 중복지급 금지 규정 정비
 - 신고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 대해 포상금 환수 근거 신설
 - 이 법과 타 법령에 따른 보·포상금, 이 법과 타 법령에 따른 구조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정비
 - ※ 법 시행 이후 이루어진 공익신고에 대해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부터 적용

신고자 보호

- 각 기관 자체 신고자 책임감면 근거 마련
 - 위원회의 책임감면 요구가 없더라도 기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스스로 신고자에 대한 징계·불리한 행정처분 등 감면 가능
 - ※ 법 시행 이후 징계 등이나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
 - ※ (개정 전) 위원회 책임감면 요구가 있어야 징계·행정처분 감면 가능
 - ※ (개정 후) 위원회 책임감면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기관이 스스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징계·행정처분 감면 가능

[붙임 2]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 '21.10.19. 공포, 10.21. 시행 -

신고자 지원

- (보상)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사유 확대
 - (현행)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 (개정)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환수 또는 판결'
 - ※ 법 시행 이후 이루어진 공익신고부터 적용

- (포상)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사유 확대
 - 다양한 금전적 처분이 포상금 지급 시 고려될 수 있도록 (현행) 과태료, 과징금 부과 → (개정) 과태료, 과징금, 가산금, 부담금 등의 부과
 - ※ 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공익신고에 대해서도 적용

[붙임 3]

공익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근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신고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471개)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신고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권익위 ■ 지도·감독·규제·조사권을 가지는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수사기관 ■ 국회의원 ■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 공익침해행위 발생 기관·기업의 대표자 및 사용자
변호사 대리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자의 인적사항 대신 변호사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국민권익위에 대리신고 가능 ☞ 내부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 '자문변호사단(100명)'을 이용하면 상담·대리신고 비용 부담 없음 * 자문변호사단 명단: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신고제도 안내>공익침해(비실명 대리신고)>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신고자 보호 *협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밀보장 -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신고자 동의 없이 알려주거나 공개·보도 금지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위원회는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 가능 ☞ 국민권익위에 '신분공개경위 확인 신청' ■ 보호조치 -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음 - 위반 시(신고자 징계·감봉 등)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위반 시(신고자 파면·해임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위원회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 체불된 보수의 지급 등 요구

근거	공익신고자 보호법
	<p style="text-align: center;">불이익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상실(예. 파면, 해임) - 부당한 인사조치(예. 징계, 감봉) -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예. 전보, 직무미부여) - 성과평가 및 그에 따른 상여금 등의 차별 - 근무조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예. 교육·훈련기회 취소, 정보 취급자격 취소) -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예. 집단 따돌림, 폭행·폭언) -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 행정적 불이익(예. 인허가 취소), 경제적 불이익(예. 계약취소) <p>☞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 감면 가능 -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징계·불리한 행정 처분의 감경·면제 가능 <p>☞ 국민권익위에 '책임감면 신청'</p> ■ 신변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자,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 가능 <p>☞ 국민권익위에 '신변보호 신청'</p> ■ 구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로 인해 이사비, 치료비,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소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실비 지급 가능 <p>☞ 국민권익위에 '구조금 지급신청'</p>
신고자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사유 : 국가·지자체 수입증대가 발생한 경우(신고자 신청) ■ 대상 : 내부 공익신고자 ■ 상한 : 30억 원
신고자 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사유 : 국가·지자체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거나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기관 추천을 받아 권익위 재량으로 지급) ■ 대상 : 전체 공익신고자 ■ 상한 : 2억 원

국민권익위, 인도·인도네시아·세르비아 등 23개국에 한국의 반부패 정책 알린다

- 청렴도 측정, 부패영향평가 등 제도 공유해
개발도상국 청렴도 개선 지원 -

(2021. 10. 18.,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과 청렴도 측정, 부패영향평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한국의 주요 반부패 법령 및 제도를 인도·인도네시아 등 23개국 반부패 관계기관에 알리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세계 각국과 공유하기 위한 온라인 연수과정을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비대면 실시간으로 운영했다.

이번 연수에는 인도 국가반부패위원회,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회, 세르비아 부패예방청, 세네갈 부패경제범죄청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 전수를 희망한 23개국 반부패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총 46명이 참여했다.

영어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과정은 국제사회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청렴도측정, 부패영향평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제도와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에 관한 강의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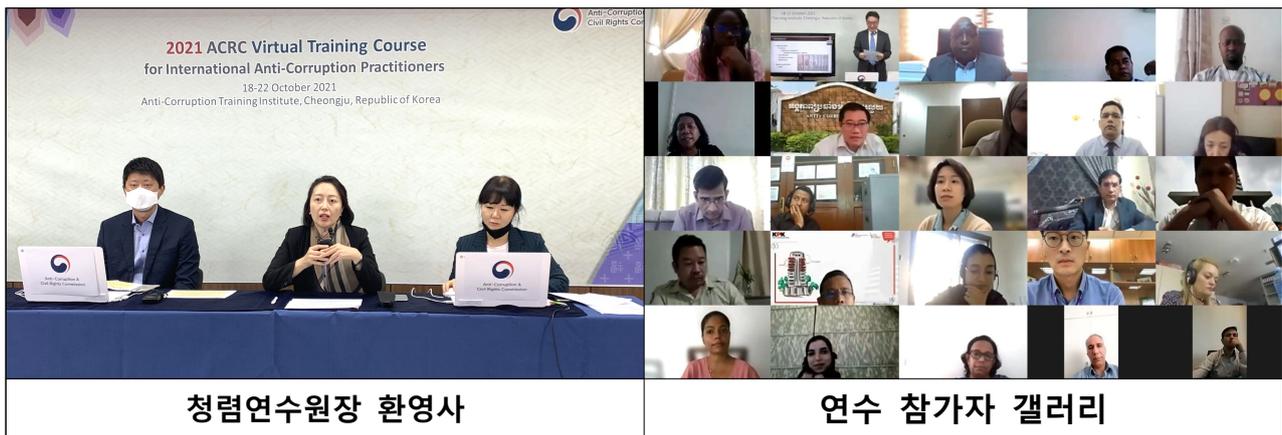
또 청렴 웹드라마 ‘달고나 시즌2’,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등 국민권익위가 공직자와 일반국민을 위해 제작한 다양한 청렴교육 콘텐츠를 영어 자막과 함께 제공했다.

이와 함께 유엔(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반부패 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연수에 참여한 국가들이 자국의 최근 반부패 활동을 상호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 공무원들의 반부패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연수과정을 운영해 왔다.

2012년 유엔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한 청렴도 측정을 비롯해 부패영향평가, 신고자 보호제도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이 국제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으면서 국민권익위의 연수과정에 대한 교육수요도 꾸준히 증가해 그동안 67개국 약 235명이 연수에 참여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 6월 유엔총회 반부패 특별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문에서는 각국의 반부패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반부패 정책과 경험이 개발도상국의 반부패 역량 강화와 청렴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 신고시스템 구축 착수

- 표준 신고시스템 이용으로 공공기관 공동이용 가능 -

(2021. 10. 28.,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내년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 표준 신고시스템 구축사업을 시작한다.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청렴포털 시스템(www.clean.go.kr)에 이해충돌 방지 업무관련 기능을 추가로 구축하는 방식으로 표준 신고시스템을 마련한다.

※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 국민 누구나 인터넷으로 공공기관에 청탁금지법 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 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과정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누리집(www.clean.go.kr)

표준 신고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에 편리하게 접근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신고·상담 받을 수 있고, ▲공공기관은 내부직원들의 사적이해관계 신고 등 의무적 신고사항을 처리·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 방지업무 주관기관으로서,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상 10대 의무 관련 신고현황·처리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신고 · 제출 의무	제한 · 금지행위
01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06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02 공공기관직무관련부동산보유·매수신고	07 가족 채용 제한
03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08 수의계약 체결 제한
0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09 공공기관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0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10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국민권익위는 안전·보안성 제고 및 공공기관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 통합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표준 신고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러한 클라우드 환경을 통해 신고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이 증가해도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고, 외부의 사이버 공격 등에서도 보다 안전한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비밀보장·보호 등에 대해서도 보안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200만 공직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이해충돌 방지 업무를 모든 기관이 내년 5월부터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 방지 표준 신고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을 조기에 수립해 조달청에 입찰 의뢰 했고, 올해 안에 사업자를 선정할 후 내년 1월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올해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이 현장에서 빨리 안착되려면 이해충돌 신고·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사용자 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통해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군장병 및 보훈가족 1만 3,000여명 권익 구제

- 국방·보훈 민원 7,889건 처리, 1,862건 해결 -
- 각급 기관의 국방옴부즈만 권고 수용률 94%에 달해 -

(2021. 10. 5.,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총 1,862건의 고충민원을 해결해 국군장병과 보훈가족 1만 3,000여 명의 권익을 구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5년간('12~'16)과 비교해 처리건수는 14.7% (6,727건→7,889건), 민원을 해결한 인용률은 7.7%포인트(15.9%→23.6%) 증가했으며 국방옴부즈만의 권고에 대한 국방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방위사업청 등 각급 기관의 수용률은 9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군사 392건(5%), 국방 5,917건(75%)건, 보훈 1,580건(20%)의 고충민원을 처리해 군 장병부터 국가유공자, 군사시설로 피해를 입은 일반 국민의 고충까지 해소했다.

먼저, <군사 분야>는 국방옴부즈만이 처리하는 민원의 5% 정도를 차지한다. 지속적인 병영문화 개선 노력으로 장병 사건·사고 등이 감소 추세에 있으나, 묵묵히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특히 섬세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

주요 사례로, 국민권익위는 “1965년 선임의 구타로 사망한 동생을 순직군인으로 인정해 달라.”라는 민원을 조사하던 중, 과거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던 자살자·구타로 인한 사망자 상당수는 이제 재심의를 통해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이를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2018년 군에 1훈령병을 포함한 이들 사망자 전체에 대한 직권 재심의를 권고했고, 이로서 사망자 91명에 대한 재심이가 실시돼 이중 90명이 순직결정을 받게 됐다.

<국방 분야>는 최근 병무행정 및 군사시설 관련 민원이 대폭 증가하면서 국방음부즈만이 처리하는 민원의 75% 정도를 차지한다. 특히 2017년 이후 사회복무요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관련 민원도 2016년 66건에서 2018년 338건으로 5배가량 급증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사회복무요원과 관련한 빈발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 ▲복무기관 재지정 등 복무고충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교육·징계 등을 통한 병역의무 이행자로서의 책무 강화 등을 병무청에 권고해, 약 6만 여명에 달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권익을 보장받는 것과 동시에 바람직한 복무문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했다.

<보훈 분야>는 문재인 정부 들어 보훈정책이 진일보하는 한편 보훈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지난 5년간 전체 처리 건수의 20% 수준이다. 국민권익위는 특히 보훈분야에서 외국 참전용사들의 권익구제까지 돕고 있다. 최근 태국·에티오피아 등의 유엔참전용사들에 대한 마스크 지원이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며 그들도 우리의 보훈대상이라는 인식이 퍼져나갔고, 국민권익위도 국경 없는 보훈민원 처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 성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그리스 노병들은 2019년 국민권익위에 “그리스군 참전기념비가 10년 넘게 여주휴게소에 방치돼 예우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라는 편지를 보내왔다. 이에 6차례의 현장조사, 16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주한그리스대사관, 국방부, 국가보훈처, 여주시 사이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로서 고속도로변에 홀로 서있던 참전기념비는 시민들 걸인 여주시 영월공원으로 옮겨지게 됐고,

그리스참전 용사들은 국경을 넘어 오랜 고충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또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는 외국출신 참전용사도 미국 베테랑으로 예우하는 법안이 통과됐는데, 우리 교민들은 조지아주 정부에 제출할 참전기록을 구하기 어려웠다. 이에 한인 참전용사 49명은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신청했고 지금까지 45명이 참전사실을 확인받았다(사진참고).

한편, 최근 5년 간 ▲유휴국방·군사시설 정리(2018), ▲군 비행장 주변 지역 빈발민원 해소(2019), ▲전국 현충시설 관리 개선(2020)등 국방옴부즈만이 추진한 총 104건의 제도개선을 통해 국군장병들과 보훈가족, 그리고 군사시설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던 국민들은 고충을 유발하는 원인 자체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군사시설 주변 지역의 주민들은 병커·초소 등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유휴 국방·군사시설로 인해 큰 불편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2018년 국방부에 유휴시설을 전수조사해 군사적 필요를 판단한 후 불필요한 시설을 철거할 것을 권고했고, 국방부는 올해까지 예산 2,956억 원을 편성해 철거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국민권익위는 지난 5년 동안 각 군 훈련소 및 신병교육대, 보훈병원, 군사시설 주변 지역 등을 직접 방문해 총 17회의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했다. 인터넷 국민신문고를 이용하거나 국민권익위를 방문해 민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현역장병, 거동이 불편한 보훈대상자, 전방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국방옴부즈만의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불편함 없이 고충을 해소했다.

현재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현역장병들이 건강히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발생하는 질병·부상 치료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한국전쟁 무렵 사망한 후 7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가족에게 전사·순직이 통보되지 않은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기 위해 국방부·국가보훈처·전국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유가족 찾기를 추진 중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안중근 의사는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야말로 군인의 본분이다.’라고 하셨다. 지금도 우리의 60만 국군장병들은 이러한 군인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국군장병들이 무사히 군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선배 군인들과 참전용사들의 고충 해결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사진〉 베테랑 운전면허증 사진을 촬영하는 재미동포 참전용사들



△ 국민권익위의 도움으로 참전사실을 확인받은 교민 참전용사들이 베테랑 운전면허증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올해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 20.3%... 20년간 최고치 기록

- 일반사건, 위법성 외에 부당성까지 국민권의 구제 위해 적극 판단 -
- 음주운전사건은 '윤창호법' 이후 보다 엄격하게 심리 -

(2021. 10. 19., 국민권익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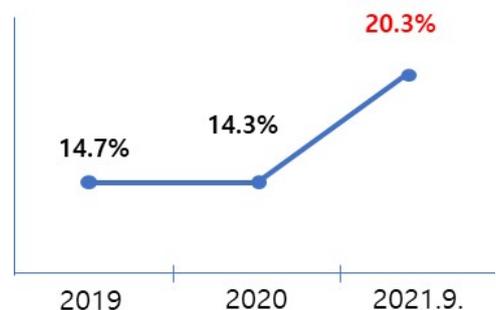
올해 9월말까지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은 20.3%로 행정심판 접수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선 2001년 이후 20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올해 9월말까지 행정심판사건의 인용률 현황을 공개했다.

2021년 분야별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말까지 일반사건의 경우 3,964건을 처리하여 이 중 502건이 인용되었고, 1,972건은 기각, 1,490건은 각하되어 20.3%의 높은 인용률을 보였으며, 이러한 수치는 2020년 14.3%와 비교하면 크게 상승한 것이다.

○ 일반사건 행정심판 인용률이 상승한 것은 최근 들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이외에 '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적극적으로 하는 데 따른 것으로, 처분의 위법성만을 판단하는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은 부당성까지 판단할 수 있어 국민의 권리를 폭넓게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



일반사건과 달리 운전사건의 경우에는 2019년 ‘운창호법’ 시행 및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 확산 등과 맞물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구제에 대해서만큼은 중앙행정심위가 엄격한 재결경향을 유지하고 있다.

- 운전면허 취소·정지사건(이하 ‘운전사건’)은 9,515건을 처리하여 이 중 721건이 인용되었고, 8,623건은 기각, 171건은 각하되어 7.7%의 인용률을 보였고, 보훈사건은 997건 중 65건이 인용, 883건이 기각, 49건이 각하되어 인용률은 6.9%로 나타났다.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심판은 국가, 지자체 등 행정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들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침해된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라며, “행정심판이 인용되면 억울한 국민들이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최근의 행정심판 인용률 상승은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처분의 위법성 뿐만 아니라 부당성을 적극 판단하고, 조정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비대면 시대에 맞춰 2년 간 6만 2천여 건 온라인 상담서비스 제공

- 생활 속 불편이나 여러 기관이 얽힌 복합민원의 문제점도
적극 찾아 해결 -

(2021. 10. 19.,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비대면 환경과 모바일 시대에 맞게 온라인 상담 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해 출범 이후 지난 2년 간 61,963건의 민원상담을 처리했다.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청사) 1층에 있으며 기존의 서울종합민원사무소를 2019년 10월 1일 확대 개편했다.

상담을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방문상담(세종민원실, 서울민원실) ▲국민콜110 전화상담 ▲서신(우편, 팩스) ▲온라인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상담은 ▲국민신문고의 '민원상담' 메뉴 ▲정부합동민원센터 누리집의 '상담신청' 메뉴를 클릭해 이용할 수 있다.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지난 2년 간(2019년 10월 1일 ~ 2021년 9월 30일) 처리한 온라인상담 61,963건 중 51,972건(83.9%)을 상담관의 적절한 답변으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한 '상담해결'로 마무리했다.

1건 당 상담처리기간도 온라인 상담 시작 당시에는 5일에서 최근에는 평균 2.7일로 단축해 신속하게 처리했다.

온라인상담은 고용노동(21.6%), 보건복지(8.7%), 주택건축(8.5%), 행정안전(7.6%), 민사법무(6.7%) 등 실업고용·코로나19 관련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애로사항 상담이 다수였다.

서울(12,293건, 19.8%), 경기(15,590건, 25.2%), 인천(3,399건, 5.5%) 등 수도권 민원인의 상담이 전체의 50.5%를 차지했다.

또한,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여러 행정기관과 관련되거나 협력이 필요한 '다수기관·복합민원'을 수십 차례의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관계기관들과 실무협의를 진행해 지난 2년간 31건을 처리했고, 업무경계가 모호해 발생한 국민들의 불편과 고충을 해소했다.

대표적인 해결사례는 ▲동탄신도시 초등학교 안전한 통학로 조성 ▲평택 안중역 신설로 인한 진입로 단절피해 해결 ▲시흥 도시공원 내 전력구 점용허가를 통한 전기 공급 ▲김포-서울강서도로 상습 침수피해 해소 ▲부산신항 버스노선 다양화 주민숙원 해소 등이 있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모바일 환경에서 온라인상담이 활성화됐고 다수기관·복합민원을 해결하는 새로운 업무체계가 정착돼 다행이다.”라며, “앞으로 민원상담에서 나아가서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이나 여러 기관이 얽힌 복합민원의 문제점을 찾아서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